

의안번호	2220823
의 퇴 인	김태선의원
회 답 일	2026.9.23.
추 계 번호	26F4300

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
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8~2029년 3년간 총 797억원(연평균 266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80조의2)	-266	-266	-266	-797	-26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0조의2 (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	○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, 본점 또는 주사무소·공장시설 이전, 공장 신설·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0조의2 (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-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되어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17.1억원, 2025년 265.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 개요)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,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등 이전,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, 2023.12.29. 신설되어 2024년 시행
-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및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(안 제80조의2제1항)
 - 취득세: 50% (조례로 수도권 25%, 비수도권 50%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)
 - 재산세: 수도권은 3년간 100% 면제,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
비수도권 5년간 100% 면제, 그 다음 3년간 50% 감면

(비수도권은 조례로 그 다음 5년간 50%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)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

□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,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,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80조의2 제2항)

○ 취득세: 50% (조례로 50%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)

○ 재산세: 5년간 100% 면제(조례로 그 다음 5년간 50%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)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

□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80조의2 제3항)

○ 취득세: 50% (조례로 25%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)

○ 재산세: 수도권은 5년간 35% 감면, 비수도권 5년간 75% 감면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

[표 2]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내용

항	대상	취득세		재산세	
		수도권	비수도권	수도권	비수도권
제1항	창업기업	50% (+25%)	50% (+50%)	3년간 100% 다음 2년간 50%	5년간 100% (+다음 5년간 50%)
제2항	본사·공장 이전기업	*접경지역 50% (+50%)	50% (+50%)	*접경지역 5년간 100% (+다음 5년간 50%)	5년간 100% (+다음 5년간 50%)
제3항	공장 신설·증설	50% (+25%)	50% (+25%)	5년간 35%	5년간 75%

주: 1) ()는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임

2) 2026년 현재 비수도권 전 지역 및 경기도는 조례로 추가 경감

- (감면실적) 현재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 초기로 2024년 감면액은 17.1억원이며, 2025년 감면액(잠정치)은 266.8억원으로 증가
- 전체 64개 기회발전특구 중 2024년에 지정된 특구는 56개, 2025년 지정 특구는 5개, 2026년 지정된 특구는 3개임
 - 이에 2024년의 경우 제도 도입 첫 해로 취득세 감면실적이 거의 없으나 2025년의 경우 취득세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

[표 3]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·이전·공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
2024~2025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세목	2024	2025	누적	연평균
제80조의2 제1항	취득세	—	0.15	0.15	0.08
	재산세	—	0.0001	0.0001	0.00006
제80조의2 제2항	취득세	—	24.6	24.6	12.3
	재산세	—	0.8	0.8	0.4
제80조의2 제3항	취득세	17.1	240.9	258.0	129.0
	재산세	—	0.2	0.2	0.1
합계	취득세	17.1	265.7	282.8	141.4
	재산세	—	1.1	1.1	0.5
계		17.1	266.8	283.8	141.9

주: 2025년 감면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로 잠정치이며 감면실적은 조례에 따른 감면실적을 포함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

(2)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□ (추계방법)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되어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17.1억원, 2025년 265.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□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수는 2027~2029년 간 총 797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계	-266	-266	-266	-797	-266
기회발전특구 내 창업(제1항)	-0.15	-0.15	-0.15	-0.5	-0.15
본사·공장 이전 (제2항)	-24.6	-24.6	-24.6	-73.8	-24.6
공장 신설·증설 (제3항)	-240.9	-240.9	-240.9	-722.7	-240.9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지원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839	jwpark1209@assembly.go.kr